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추가〉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7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0. 31.

다. 회 부 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추가(안 제23조 및 별표 제12호)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신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지역사랑상품권기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6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 사업	11,430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2,598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예산처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무화하고자 하는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추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기금 개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16조제3항)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 ※ 기존에 재량사항이던 것을 의무화
기금의 조성(재원) (안 제16조제4항)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기금의 용도 (안 제16조제5항)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정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사 지원 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지원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 등²⁾으로,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됨.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국고 보조 규모의 변동성이 커서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집행 및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6월 말)
본예산 (추경)	721 (6,298)	10,522 (12,522)	6,053 (7,053)	3,525 (3,525)	3,000 (3,000)	- (4,000 ^{**})
집행액	6,298	13,522 [*]	6,956	3,525	3,000	집계중
발행 지자체 수(개)	185	187	188	190	190	190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액	133,216	235,871	272,196	209,413	175,769	99,933

* 전용 예산 1,000억원 포함

** 2025.11.말 기준 예산현액은 10,000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집행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예산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되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액되는 등 연도별로 지원 규모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액의 변동을 야기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1조원의 재원이 편성되는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등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일반회계 중심의 정부 예산 지원 방식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법정배분 기관으로 명시하여 복권수익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추가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임.

복권판매액 증가로 복권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배분기관·기금에 배분되는 금액도 점차 증가하여 2026년 계획 기준 1조 1,430억원임.

[2021년~2026년 복권기금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규모	71,941	76,412	78,729	84,354	90,948	95,863
법정배분	8,103	9,551	10,338	10,402	11,051	11,430
공익사업지원	17,972	19,949	20,109	20,801	21,742	22,598
여유자금운용	4,582	963	1,696	2,074	2,095	2,119
기타	41,284	45,949	46,586	51,077	56,060	59,716

주: 2021년~2025년은 결산 기준(2025년은 잠정), 2026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정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수입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법정배분기관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배분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정배분비율이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어 지역사랑 상품권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기획예산처도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법정배분기관 추가 관련 복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타 개정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현재도 법정배분사업(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복권기금이 지원 중³⁾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26년 예산안 기준 4,035억원 편성(법정배분 총액의 34.534%)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단위: %, 억원)

복권수익금	35%	법정배분사업	<법정대상기관>		배분비율	'25 계획	'26 계획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12.583	1,374	1,150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0.371	920	948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310	617	60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56	826	833
			국 가 유 산 보 호 기 금		14.286	1,448	1,706
			지 방 자 치 단 체		17.267	1,906	2,062
			제 주 개 발 특 별 회 계		17.267	1,908	1,973
			사 회 복 지 공 동 모 금 회		4.286	474	474
			산 림 환 경 증 진 자 금		5.846	775	802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6.428	801	875
			< 소 계 >		100.0	11,051	11,430
기타수입	65%	공익사업	<공익사업 분야>		<사업수행기관>	'25 계획	'26 계획
			저소득 주거안정		주 택 도 시 기 금	4,500	4,000
			국가유공자 복지		보 훈 기 금	216	231
			저소득·소외계층		양 성 평 등 기 금	7,769	8,066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513	1,290
					기 후 대 응 기 금	1,076	1,069
					보 건 복 지 부	1,045	1,116
					금 융 위 원 회	1,964	3,500
					교 육 부	258	371
					법 무 부	22	28
			문화·예술진흥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2,677	2,809
					영 화 발 전 기 금	45	13
			재해·재난 구호		응 급 의 료 기 금	64	56
					행 정 안 전 부	50	50
			< 소 계 >			21,199	22,598
			< 총 계 >			32,251	34,028

※ 자료: 기획예산처

한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심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 -----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 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3

참고 1

현행 법정배분기관 현황

법정배분기관	배분비율 (35% 기준)	용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4.404%)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
2.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3.630%)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 -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3.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1.859%)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4.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356% (2.2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산업기반 조성
5.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5.000%)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
6. 지방자치단체	17.267% (6.043%)	- 지자체 문화·예술·복지 -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특별회계	17.267% (6.043%)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500%)	사회복지사업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846% (2.046%)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2.250%)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
계	100% (35%)	